

2026.02.24.(화) 기준

2026학년도 안전관리계획

금강대학교



금강대학교
GEUMGANG UNIVERSITY

목 차

□ 2026년 안전관리계획

I. 개요	3
1. 목적 및 방향	3
2. 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II. 유형별 상황 조치 및 대응	6
1. 자연재난	6
2. 안전사고	10
3. 감염병	15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6
IV. 안전교육	17
IV. 유관기관 연락체계	18

I 개요

1 목적 및 방향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제27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목적

-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각종 유해 위험요인 점검
- 예방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 요인 최소화
- 상황 발생 시 행동지침 및 요령을 통해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능력 제고
- 교내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

□ 방향

- 우리학교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대상으로 고려하여 안전 경영 방침 수립
- 컨트롤타워를 통해 명확한 업무처리
-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우리대학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인원 확보 노력
- 안전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

2 조직의 구성 및 운영

2.1.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금강대학교	설립구분	사립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홈페이지	www.ggu.ac.kr
전 화	041)731-3114	총 장	차 시 환

□ 교직원 및 학생현황

○ 교직원 및 학생

(단위 : 명)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총합
	석사	박사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정규직	계약직*	
49	5	11	7	3	16	17	6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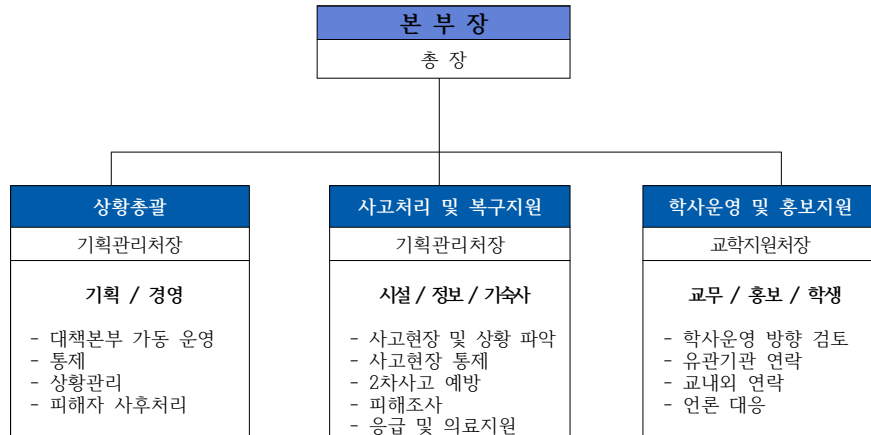
※ 계약직의 경우, 행정조교 포함

○ 캠퍼스 배치도



2.2. 재난안전관리 운영방안

□ 재난안전관리본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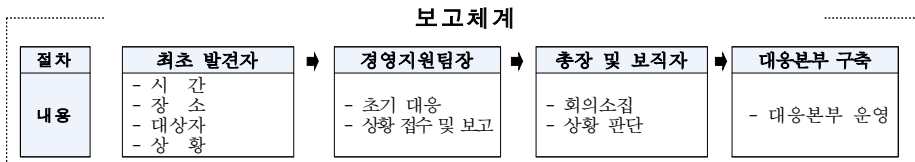


* 인력 및 물자 지원 : 교수학습, 교육역량, 취업지원, 대학원

* 관련 기사 및 자료 수집 : 비서실, 도서관

□ 보고체계

-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 업무담당 및 연락망

유형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안전사고	화재	시설관리팀	041)731-3341~5	
	정전			
	엘리베이터			
자연재난	건축물	시설관리팀	041)731-3341~5	
	지진			
	대기			
	폭염			
학생	태풍	경영지원팀	041)731-3311~4	
	식중독			
	감염병			
사이버	기숙사	정보지원팀	041)731-3063, 3064	
		정보지원팀	041)731-3351, 3353	

II

유형별 상황 조치 및 대응

1

자연재난

□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 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 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예방 및 대응, 재발방지

-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1.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2.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3.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1.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2.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3.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1.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상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2.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3.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영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4.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5.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2 안전사고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 수업,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예방 및 대응, 재발방지

-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1.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딴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용 규정화

2.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작성예 : 모니터링 및 평가 >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상기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 지속적인 수정 및 보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각 대학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각 대학의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 ※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 **예방** :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2~제33조의3) 관련
 - **대비** :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대응** :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복구** :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안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제7장 재난의 복구(제58조~제66조의3) 관련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장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3.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4.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 도서관, 식당, 사무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운동장, 옥외 공간(조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5.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 대응·조치 단계 계획

1.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2.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위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총장이 관리

<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

유아·초·중·고·대학생·교직원·방문객·외국인 유학생·교내·외·행사·행위·심	유아·초·중·고·대학생·교직원·방문객·외국인 유학생·교내·외·행사·행위·심	극심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유아·초·중·고·대학생·교직원·방문객·외국인 유학생·교내·외·행사·행위·심	중대	경계	경계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유아·초·중·고·대학생·교직원·방문객·외국인 유학생·교내·외·행사·행위·심	중간	경계	경계	경계	경계	심각	심각	심각	심각

가장 피해 규모	<p>경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단순 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 가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규모)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주의	주의	주의	경계	경계	심각
	<p>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또는) 교직원의 개인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규모) 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관심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p>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음	응급처치		통원치료	입원치료	사망 연구장애	
		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대한 주변의 지원					
		사소	경미	중간	중대	극심	
요인 1.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①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②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③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④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⑤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⑥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1.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2.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보직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2.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총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 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3.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3 감염병

위험요인

○ **호흡기 질환**(인플루엔자 등) :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은 가장 이환율이 높은 질병이며 모든 감염질환 발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예방 및 대응, 재발방지

○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염병 관련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 2. 감염병 대비를 위한 조치**
 - 실내 공간 수시로 환기하기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 손이 자주 닿는 표면과 물건(예. 문손잡이, 전등스위치, 키보드 등) 소독하기
 - 감염병 발생 시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 구축

○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기준일자 : 2024.02.09.)

구분	내 용											
연락 및 보고체계	- 연락 기숙사: 041)731-3063 경영지원팀: 041)731-3311~5											
	- 보고체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절차</td> <td style="width: 20%;">경영지원팀장</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20%;">총장 및 보직자</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25%;">대응본부 구축</td> </tr> <tr> <td>내용</td> <td>- 초기 대응 - 상황 접수 및 보고</td> <td></td> <td>- 회의 소집 - 상황 판단</td> <td></td> <td>- 대응본부 운영</td> </tr> </table>	절차	경영지원팀장	→	총장 및 보직자	→	대응본부 구축	내용	- 초기 대응 - 상황 접수 및 보고		- 회의 소집 - 상황 판단	
절차	경영지원팀장	→	총장 및 보직자	→	대응본부 구축							
내용	- 초기 대응 - 상황 접수 및 보고		- 회의 소집 - 상황 판단		- 대응본부 운영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	-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수검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 시 등교 및 출근하지 않고 병원방문 진료·수검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자택 귀가를 위한 물품 휴대 후 병원으로 이동											

	- 학생·교직원이 의심증상 발생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 및 교직원 중 귀가가 어려운 경우 기숙사 내에서 격리조치
--	--

※ **상황 발생 시**, 상세 조치사항은 학내 보건안내 게시판 공지 예정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건물 보험

(단위 : 원)

기준연도	보험명	계약일자	만료일자	연간보험료	비고
2025년	재산종합보험	2025.04.25.	2026.04.30.	8,064,002	

학생 보험

(단위 : 원)

기준연도	보험명	계약일자	만료일자	연간보험료	비고
2025년	대학종합보험	2025.06.01.	2026.06.01.	353,200	

보상한도

(단위 : 원)

기준연도	보험명	보상 내용	보상 한도액	비고
2025년	재산종합보험	재산종합위험담보	89,055,964,261	
		기계위험 담보	1,000,000	
	대학종합보험	학교시설배상책임(대인)	100,000,000	
		학교시설배상책임(대물)	10,000,000	
		치료비	3,000,000	

	신입생 OT 치료비	3,000,000	
	교직원배상책임(대인)	100,000,000	
	교직원배상책임(대물)	10,000,000	

IV 안전교육

□ 관련규정

「금강대학교 취업규칙」

제 56조(예방교육의 실시)

본 대학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교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본 대학교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제61조(안전보건 교육)

본 대학교는 교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5조(법정교육훈련의 실시)

① 본 대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이 규칙 제56조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의 가정폭력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는 이 규칙 제61조와 관련하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대학교는 이 규칙 제60조와 관련하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⑤ 이 규칙 53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관련 교육운영 결과보고

연번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횟수	운영시간	비고
1	소방훈련	소방합동훈련 (대면 훈련)	년 1회	1시간	직원, 학생 대상
2	소방훈련	소방 비상대피훈련 (비대면 훈련)	년 1회	1시간	직원, 학생 대상
3	안전한국훈련	재난교육홍보 및 안전점검 실시	년 1회	안전한국훈련 기간	직원, 학생 대상
4	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제반 교육 실시	수시	1시간	직원 대상

V 유관기관 연락체계

○ 유관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1	논산소방서	상월면119지구대	041-736-5119	
2	반월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041-730-0402	
3	논산경찰서	상월파출소	041-746-3879	
4	논산시청	상월면사무소	041-746-8672	
5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남부지사	041-912-3250	
6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세종지역본부	042-485-0019	
7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	041-123	대표번호
8	백제병원	원무과	041-730-8888	
9	건양대학교병원	권역의료응급센터	042-600-9119	
10	공주의료원	응급실	041-962-1111	
11	논산시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	041-746-6724,6725	
12	논산시 보건소	방역팀	041-746-8041~3	